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8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 김주영・이용우・윤준병

민형배 · 신정훈 · 김정호

정태호 · 윤건영 · 박홍근

임오경 · 이용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무부)에 따른 등록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용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한 이유로 외국인은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배제되어 왔음.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세율·일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임. 더하여 외국인과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하고 있으므로, 그 체류자격(취업, 영주 등)과 등록기간을 근거로 '세대주·세대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거주 목적 주택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마련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2019년 5월국민권익위원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 및 2019년 10월 7일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참고). 또한 5년 이상 근로소득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대출이자상환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거주 의지를 갖고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특히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5서5413)가 있고, 실제 과세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국세통계 기준 2016년 770명, 2017년 50명)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외국인 주택자금 공제 여부에 대한 업무 혼선이발생해왔으므로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가"를 "말한다) 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세대 외국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부의"를 "또는 세대 외국인 여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대주에"를 "세대주 또는 세대 외국인에"로, "세대주가"를 "세대주 또는 세대 외국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세대주가"를 "세대주 또는 세대 외국인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 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 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 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 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 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 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 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 이하 이 조에서 "세대 외국인" 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하다)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 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 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 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

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 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세대주 <u>여부의</u> 판정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2. (생략)
-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4. 무주택자인 <u>세대주가</u> 「주택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1또는 세대 외국인 여
<u> </u>
부의
<u> 1 · 1</u>
•
2. (현행과 같음)
2. (6 6 7 6 6 7
3. 세대주 또는 세대 외국인에-
세대주 또는 세대 외국
인이
<u>Ľ 1</u>
•
4세대주 또는 세
<u> </u>
대 외국인이
<u>게 거ㅋ단기</u>

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 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 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 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 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 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 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 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 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

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 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5. (생략)

⑥ ~ ⑪ (생 략)

<u>.</u>
5. (현행과 같음)

⑥ ~ ⑪ (현행과 같음)